

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오영탁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3. 제안이유

○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의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조항을 신설·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지정의 해제(제24조), 허가사항(제29조), 신고 사항(제36조)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(제40조), 정기조사(제48조) 등 개정

○ 분과위원회 구성(제11조제2항, 제6항, 제7항), 도지정자연유산의 기준 및 절차(제17조),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(제18조),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(제28조), 동물의 수입·반입 신고(제37조)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(제38조), 정기조사의 시기 및 방법(제49조) 신설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 필요성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의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고, 충청북도의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# 나. 주요 내용 검토

- 안 제11조는 자연유산위원회에 동식물유산분과위원회, 명승지·지질·광물유산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  - 자연유산위원회에 세부 유형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을 높이고,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체계적 심의·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함.
- 안 제17조는 도지정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지정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음.
- 안 제24조, 제29조, 제36조는 상위법에 맞게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의 해제, 허가사항, 신고사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였음.
- 안 제28조는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신설하여, 자연유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.
- 안 제37조는 동물의 수입이나 반입 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,

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로 지정된 동물의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.

- 안 제38조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였음.
- 안 제40조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48조는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에 대한 정기조사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음.
- 안 제49조는 정기조사의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여, 자연유산의 보존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.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,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 부합함.
- 충청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체계를 강화하여 충청북도 자연유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조례 주요 내용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